



(주)제일기계기술단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적용대상 건축물은 매년 1회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계설비성능점검 적용대상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창고시설제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www.jeilgigi.com

대표전화 1811-3560

H.P 010-3536-3560

Mechanical Equipment Performance Check



(주)제일기계기술단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Technical Service기업

1996년 제일소방방재를 시작으로 소방점검과 더불어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주)제일기계기술단은 신용과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상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통하여 최고의 Smart Technical Service로 고객만족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회사명

(주)제일기계기술단

■ 설립일

2023년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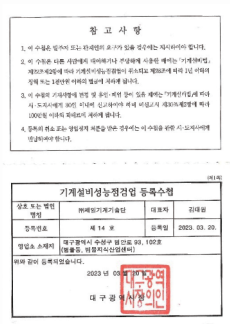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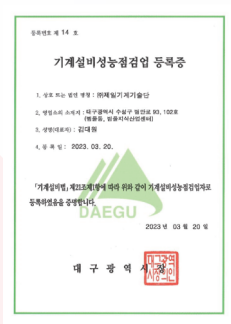
■ 대표이사

김대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93,102호(범물아파트형 공장)

■ 면허 및 등록증



■ 찾아오시는 길



(주)제일기계기술단

www.jeiligigi.com

대표전화 1811-3560

H.P 010-3536-3560

팩스 053) 721-6113

이메일 cheil0119@naver.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93,102호

(범물아파트형 공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기준 및 업무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 적용대상건축물]

구분 NO	연면적 (㎡)	공동주택	최초점검시기	성능점검기준
01	3만㎡ 이상	2천세대이상	21.8.9 ~ 22.8.8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기준 제11조(성능점검)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단,창고시설 제외)
02	1.5만㎡ 이상~3만㎡ 미만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22.4.18 ~ 23.4.17	
03	1만㎡ 이상~1.5만㎡ 미만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23.4.18 ~ 24.4.17	
04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23.4.18 ~ 24.4.17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수량의 50%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수량의 50%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수량의 50%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수량의 50%이상	
	팽창탱크	전체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수량의 20%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이상	용량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식	
급수·급탕 설비	급수·급탕설비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서비			
덕트설비			VAC, CAV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은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첨단 계측기 보유현황]

기계설비 시행령 [별표기] 장비 보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초음파 유량계	디지털 압력계	데이터 기록계	연소가스 분석기	건습구 온도계	표준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디지털 풍속계	디지털 풍압계	교류전력 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아들자 캘리퍼스	이산화탄소 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기계설비법 &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이행사항	항 목	세부항목	고시일 (21년8월9일)		작성자 (선임자)	
			고시 이전 건축물	고시 이후 건축물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6조	기계설비 준공도서	준공도면	○	○	관리주체	
		시방서	X	○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X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제조사의 성적서	X	○		
	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X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	X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	X	○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	X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관리주체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특급	1	~ 2021.04.17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보조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고급	1		
	2천세대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보조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중급	1	~ 2022.04.17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초급	1	~ 2023.04.17	
	500세대 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초급 또는 보조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초급 또는 보조	1	~ 2024.04.17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주체	
■ 안전조치계획 수립(재해방지대책 및 응급상황매뉴얼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주체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기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주체	
■ 기계설비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건물별 기준일 적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성능점검업체	
* 유지관리점검 기준 :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CHEIL.TECH

(주)제일기계기술단

대표전화 1811-3560